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불용물품 관리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서 업무에 필요한 물품, 기자재 등을 구입·관리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3조에 따르면 물품관리관은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하거나 폐기(해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는 물품이 불용품으로 결정된 때와 불용품이 처분(매각, 양여, 폐기 등)된 때에는 표준서식에 따라 기록을 관리(전산자료로 대체 가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교실 폐쇄에 따라 불용물품을 처분하면서 기존 수립한 처분계획과 다르게 처분하였음에도 변경계획이나 처분에 따른 결과보고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불용품 처분에 따른 폐기 조서 작성을 누락하였으며, 기폐기된

물품 99종을 매각 대상인 불용물품 처분대상목록으로 제출하는 등 불용물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